

## 제1차 2022년도 산림청 혁신제품 평가계획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2년 2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



### 1 제도 개요

- 목적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주요 내용
-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하며, 혁신제품 운영 제도 중 패스트트랙1에 해당

#### 【 ‘혁신제품’ 제도 개요 】

▶ (개념) ①R&D 결과물(정부수행),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존 공공성이 있는 제품 중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공공수요발굴위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구 분	내 용	확정
① 패스트트랙1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관련부처 심의상장)	공공수요 발굴위 의결
② 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심의상장)	
③ 패스트트랙3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기재부 심의상장) * 관련부처 추천제품 반영	

추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산림청고시 제2021-156호)

### 2 신청 자격 및 방법

#### 가.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1.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해서 제품을 개발한 기업
  2.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 수행기관 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나. 신청방법

- 제출기간(1차) 2022.2.3.(목) ~ 2.16.(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접수 확인' 메일 회신 예정
- 제출기간(2차) 2022년 6월 추진(추후 공지, 연 2회 예정)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ftisrnd@kofpi.or.kr)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 혁신제품담당자  
(02)6393-2653(이경재 주임)

○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 으로 통일
- \* 압축파일명: 기업명\_제품명

파일명	파일명(제출 서류)	비고	참고 서식
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필수	첨부1
2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2
3	제품 규격서	필수	첨부3
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첨부4
5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필수	첨부5
6	법정 의무 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 증빙 파일명 예시) 6.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 확인) 증빙 파일명 예시) 6.2. 00인증	필수	첨부6
7	<산림청 R&D에 직접 참여한 경우> -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수행 협약서 (FTIS(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다운) <산림청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발명기관의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기술 이전 계약서 - 국유특허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필수	-
8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9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이행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EX) 9.1. 00시험성적서 EX) 9.2. □□시험성적서	해당하는 경우	첨부7
10	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 <자료가 여러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EX) 10.1. 특허증 EX) 10.2. 프로그램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3 추진 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시기
제품등록 (사전조건)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li> <li>* 물품식별번호 발급은 약 2~4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필요(별첨 자료 참고)</li> <li>※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li> </ul>	1월 중
↓			
신청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li> </ul>	2월 3일 ~ 2월 16일
↓			
평가	한국 임업진흥원/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 검토</li> <li>서류평가, 현장평가</li> </ul>	2월~3월
↓			
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산림청/ 한국 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20일 이상)</li> <li>이의신청 접수</li> <li>기재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산림청)</li> <li>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li> </ul>	3월 중

### 4 평가 운영 일정

연간 운영 계획

연 2회, 상·하반기 운영 예정

\* 상반기: 2월 / 하반기: 6월 추진(추후 공지)

## 가. 서류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점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점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점	
	공공구매 필요성 (10)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9~10점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점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야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점	
	현안의 시급성 (10)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0~2점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경우	9~10점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점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9~10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7~8점	
	시장성 평가 (20)	기대 시장규모 (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3~6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0~2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9~10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7~8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4~6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3~4점		
타 산업 파급성 (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2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9~10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7~8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3~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혁신성 평가 (40)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0~2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임	10~12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3~15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10~12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7~9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0~6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9~10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7~8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5~6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0~2점	

## 나. 현장평가 항목

평가항목	주요 내용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